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</u>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 검 찰 청

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
2024. 10. 28.(월)

자료문의 : 공판1과

전화번호: 02-3480-2360 주책임자: 공판1과장

제목

2024년 9월 공판우수사례 선정

- 대검찰청은 '24년 9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
 사법정의를 구현한 3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(※상세내용 별첨)
 - ① 속칭 '바지사장'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고, 공범 C 재판에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후 도주한 실업주 A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및 위증으로 구속하고, A의 접견녹취록 및 통신자료, 휴대 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A가 공범 B에게 C 재판에서 'A는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라'며 위증을 교사하고, B가 게임장 영업에도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 A를 위증교사, 위증,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, B를 위증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 사례 [김천지청]
 - ② D가 현행범 체포과정부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소환과정까지 친형 E의 성명을 모용한 특수협박 사건에서, 범행 당일 D와 E의 **발신기지국 위치 확인, 지문 감정** 등을 통해 성명 모용 사실을 밝혀내어 D를 **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 행사,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인지, 구속기소**하고, 특수협박 사건의 피고인을 D로 표시정정한 사례 [인천지검]
 - ③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금붙이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사건에서, 피고인을 설득하여 **훔친 금붙이들을**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,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은닉 장소를 면밀히 수색하여 피고인이 땅에 파묻어 은닉한 4,0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들을 압수한 뒤 피해자 환부신청한 사례 [춘천지검]

[첨부: 공판우수사례 선정 내역]

| | <u>공판우수사례</u> | ୍ଥିଷ ମସ୍ତ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순 | <u>소속</u> 부 장 | 고파ㅇ시ᅵᅰ |
| 번 | 두 상 주임검사 | 공판우수사례 |
| 1 | 김천지청 형사2부 | 【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】'바지사장'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고 공범 재판에서 위증한 게임장 실업주를 구속하고, 실업주가 다른 공범 에게 위증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한 공범을 밝혀낸 사례 사건 개요 |
| | | ○ 게임장 실업주 A가 공범 C의 재판에서 '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'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고, 공범 B에게 'A는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'고 허위증언해 달라고 한 사건 |
| | 정미란 (3 7 기) | 건정이유 ○ '바지사장'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고 C 재판에서 실업주가 아니라고 위증 후 도주한 A를 게임산업법위반 및 위증으로 구속하고, |
| | 공도운 (변9) | ○ A의 접견녹취록 및 통신자료,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공범 B가 A의 부탁을 받고 'A는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'고 허위증언한 사실 및 B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어 A, B로부터 위증교사 및 위증 등 자백을 이끌어내고, ○ A를 위증교사, 위증, 게임산업법위반으로 구속기소, B를 위증, 게임산업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|
| 2 |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|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【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】체포과정부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소환 과정까지 친형의 성명모용한 사실을 밝힌 사례 사건 개요 ○ D가 특수협박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과정부터 공소 제기 후 공소장 부본 송달 과정까지 친형 E의 성명을 모용한 사건 |
| | 장진성(37기) | 건정이유 ○ 특수협박 사건의 피고인 소환 과정에서 소환장을 받은 친형 E가 성명모용을 주장하여 기록 검토한 결과, 현행범 체포 및 경찰 조사 당시 구두로만 인적사항 확인한 사실, 기록에 D의 주소,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, ○ E에 대한 참고인조사, 특수협박 사건 당일 D와 E의 발신 |
| | 최윤경(변12) | 기지국 위치 확인, 특수협박 사건 조서의 지문과 D, E의 지문비교 감정 등 진행하여 D가 성명 모용한 사실 명백히 밝혀내고, ○ D를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인지, 구속 기소하고, 위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표시정정하는 등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소환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※ 2개월간 사법질서 방해사범 3명 인지·기소 |

| 순 번 | 소 속 부 장 주임검사 | 공판우수사례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춘천지검 형사2부 | 【공소유지 우수사례】금은방 강도상해 사건의 공판 중 피고인이 은닉한 강도 피해품인 금붙이들을 찾아 피해회복을 한 사례 |
| | | ○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금붙이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사건 |
| | 홍승현 | 선정 이유 |
| 3 | (35 7) | ○ 강도 피해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경청하여,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, 훔친 금붙이들을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, |
| | 김방글 (40 기) | ○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, 교도소와 함께 은닉 장소를 면밀히 수색한 결과 피고인이 땅에 파묻어 은닉한 4,0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들을 압수한 뒤 법원에 피해자 환부 신청하여, ○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|